

|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_ 국회편 |

#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입법 반영의 보증서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입법 경로가 정착될 때

- **일시** 2019년 2월 13일 17시
- **장소** 여의도 인근 식당
- **사회** 오영하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 **참석**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조선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좌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
- **배석** 이세종 경사노위 전문위원  
최선영 경사노위 주무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결론에 도달한 사안들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기구 및 참여주체들과 국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코너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 사회적 대화, 입법의 도구인가, 입법의 과정인가

**이세종** 경사노위에서 작년 1월부터 격월간 <사회적 대화>라는 기관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좌담은 이 기관지에 실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고, 이번호 주제는 국회가 바라보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국회라는 입법기관과 사회적 대화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주제로 폭넓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조선옥 보좌관 오셨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정영훈 연구위원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 정치학과 최태욱 교수님이 오셨고, 경사노위 손영우 전문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사회는 경사노위 오영하 대외협력실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저는 경사노위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이세종 전문위원이고,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최선영 주무관이 같이 왔습니다. 실장님께서 사회를 맡으셔서 앞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오영하**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국회 편을 잡은 것은 사회적 대화의 귀결이 보통 국회에서 일어나죠. 현재 한창 논의하고 있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도 그렇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같은 경우 한정애 의원님께서 연말에 노조법 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도 입법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물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입법과정이 사회적 대화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이 공감이 되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끌어갔을 때 입법과정에서 조금 더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위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좌담이 기획된 겁니다.

일단 사회적 대화와 국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색션을 잡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입법과정에서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는지, 원활한 입법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사회적 대화 자체를 입법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욱** 질문이 재미있네요. 도구냐, 입법과정 그 자체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도구로 가끔씩 쓰이는 것 같아요. 진보, 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도구로 쓰려고 시도하는 거 같아요. 사회적 합의주의가 제도로서 정착된 나라들은 사실 입법과정 그 자체죠. 여기에 기반하여 입법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사노위에서 노력은 해왔지만 사실상 입법과정 일부라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타개책으로서 그냥 사회적 협약 만듭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입법과정의 일부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법과정의 효력 문제부터 생기잖아요.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하면 작동이 잘되는 거고 수용을 못하면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없지만,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런 문제들을 입법으로만 결정해버리면 수용여부는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해서 사회적 구속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가면 제일 부드럽기 때문에 입법과정의 일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끔 도구로 쓰이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정영훈** 어쨌든 경사노위라는 것이 행정부 쪽에 있는 것인데,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쳐서 정부에서 입법안을 넘겨주는 것이죠. 지금 경사노위가 어쨌든 행정부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표현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사노위의 대표성 문제를 보면 의회에 넘어와서 입법과정이 작동할 때는 경사노위에서 한 번 거쳐 왔던 문제죠.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의제 국가에서 정당들이 다시 한 번 사회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을 분리해보면 너무도 낭비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상임위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는 뭐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당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보완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정부 입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입법할 때 또 어떡할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당이 계급정당을 표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이해대립이 심한 입법을 할 때 사회적 대화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당에서 일단 올리면 상임위에선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경사노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있을 때 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위상이 있는데, 국회로 그걸 가져오면 국회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당민주주의에서 의원들 개개인이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의 대표로서 성격을 갖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조선옥**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집합체인 국회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닌가요? 일부인 거예요. 다양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는 거고,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도 사회적 대화기구이고, 고용보험위원회나 산업안전위원회 같은 다양한 사회적대화기구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옥 한정에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좌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기구와의 관계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들어오면 진보, 보수 의견이 다르고 경영계를 대변하는 당과 노동계를 대변하는 당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려 하지만 여당이 갖는,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의견 조율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도구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효율성의 측면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제출한 법안 중에 최저임금도 일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위반된다 말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여야 의원들이 합의 처리할 수 있었던 명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합의점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단계를 거침으로써 국회에서 소모적인 것들을 단축하는 실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도구냐 입법과정이나 애써 구별하기 보단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 문제가 언제나 딜레마입니다. 노사, 공익이 합의안까지 갖고 오면 좋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IMF 땀 말고는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공론화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법할 때 반대하는 쪽에선 이용당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보면 사회적 낭비를 축소시키고 신속하게 입법발의를 했던 건 전 단계로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당사자들 간의 입장과 이견이 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지 합의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대화란 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 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노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부분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태욱** 경사노위가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있고, 기업과 중위 수준, 즉 산업 수준까지 일상화되면 입법과정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아요. 국회는 그야말로 입법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합의는 만들어졌으니까 하여 정답은 아닐지라도 갈등 주체들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잖아요.

**조선옥** 어느 정도 반발하는지도 알 수 있고 사회적 갈등관리도 가능하겠죠.

###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원활한 입법의 조건

**손영우** 보좌관님께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면 입법과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당에서도 입법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공청회나 여러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실제 입법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가질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조선옥** 노동법 같은 경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사회구성원들의 수용성 측면이죠. 노동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위법이 많은지 보면, 사회적 대화,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해서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일부 있는 듯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를 통해 그들의 입장과 의견들이 반영되면 현장에서 더 잘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손영우** 노동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 노사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선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합의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대화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법안처리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안은 노사가 팽팽하게 긴장하니까 노사가 상호 견제하는 형국이라 노사 일방이 반대하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환경법안의 경우 달라요. 2013년 4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화학물질등록법은 전부개정안인데도 발의에서 통과까지 한달 남짓, 암튼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었어요. 사실 기업에 꽤 부담을 주는 것인데도 환노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사위에서 경영계가 한나라당을 통해 세계 반대해서 일부 내용이 약화되었지만. 환경법안은 경영계의 감시가 적어 수월했던 거죠.

노동법안은 발의에서 통과까지 노사의 상호 견제, 국회에 압박, 설득이 워낙 강하다 보니 통과되기 위해선 노동계, 경영계간 균형지점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는 주요한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노동법안 처리에 있어서 사회적대화란, 도구이면서도 실질적 입법과정이 되는 거죠.

**최태욱** 교과서적 얘긴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물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피차 인정한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갈등 주체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절충해서 승복하기, 그리고 공식적으로 약속하기라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합의했으니 그 내용에 그냥 승복하기로 약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갈등주체가 대화의 주체가 되고 합의 주체가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집단지성을 발동시키고 공론화를 시키자면 갈등주체가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손영우** 지금까지는 입법과정의 도구로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입법과정의 일부가 되는 경우,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구로도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배경은 노사관계 측면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또 정치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서구와 다르게 입법과정의 일부도 되지 못하고 도구로도 사용되지 못하는지 정치적 구조와 연관시켜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태욱**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이잖아요. 동아시아 최초의 사회협약체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사실 알다시피 작동 1년 만에 깨진 거잖아요. 그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제도화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어느 정권이건 간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한시적인 도구로도 작동이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라는 점도 있지만 정치구조에와 관련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많아요. 우선 이것부터 볼까요?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합의일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입법과정을 통과해야 의미 있는 법제도 정책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저 사회적 합의에 그칠 뿐이죠.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는 주고받기가 잘 이뤄졌을지라도 국회에 가서는 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정치 문제라는 거죠.

노사정위원회가 98년에 합의한 내용도 위기상황에서 노사가 상호간에 정말 적절히 양보와 타협을 잘해준 거거든요. 지금 봐도 놀라운 것들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통과된 건 대개가 사측에게 유리한 거였죠.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만 됐지 복지 강화나 노조의 정치권 강화, 이런 건 안 됐잖아요.

저는 민주노총이 이번에 불참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제도 논리로만 따지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들어가 봐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테이블에서 얘기해도 민주노총이 바랐던 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낼 가능성은 낮아요.



경사노위에서 뭔가 결정해서 올린다 할지라도, 즉 노조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물들이 국회로 보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백업해줄 정치세력이나 대리인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비교적 노동을 중시하지만 비교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민주당을 노동대표정당이라고 볼 순 없죠. 정의당이 유력한 노동대표정당도 아니고,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얻어낸 결과물을 법적 제도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줄 정치 세력은 국회에도 없고 행정부에도 없으니까 완전히 개인기로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닐지 몰라도 매우 어려운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정치 구조로 봤을 때는 참여 안 하는 민주노총이 오히려 합리적이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회적 대화가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 제도가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죠. 아주 심각한 위기, 예컨대, IMF 체제를 겪었던 때 처럼 그 정도 위기가 오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사회협약 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이 다 위기라고 느끼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입법의 일부로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작동하고 그게 제도화되길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노총의 불참, 아쉬움 남는다

**오영하** 사회적 대화가 입법과정의 일부면 국회가 심사함에 있어서 구속을 받을 수 있죠.

**조선옥** 그게 법제화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신뢰의 문제 아닌가요?

**손영우** 프랑스 노동법 1조에는 노동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땐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태욱**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래요. SER을 안 거치면 아예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조선욱**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손영우** 협의가 합의는 아니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노사의 의견을 일단 들어서 입법안을 내잖습니까?

**조선욱**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 올리고 고용보험법도 고용보험위원회라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꼭 경사노위가 아니더라도 있지만 전체 틀 속에서 협의할 수 있는 데는 경사노위인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노동친화적인 정부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가급적이면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노동친화적 정부 세워질 때까지 투쟁만 할 게 아니라면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정부와 협조할 수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기존의 정부에 대한 태도와 똑같은 민주노총의 태도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태욱** 민주노총이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노조원한테만 책임지면 되죠.

**조선욱** 총연맹이 갖고 있는 강령을 보면 정치 사회발전을 위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강령을 보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손영우**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와 다른 근본적인 한계,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대통령제이고, 정부가 합의한다고 해도 의회통과를 보장해주지 못

하는 정치구조라는 게 있죠. 또 현재 의회의 구성상 친노동 정당이 큰 세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서는 합의해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참가해야 하는 동인이 생긴다고 봅니다. 의회에 강력한 친노동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친노동적 입법은 끌어낼 것인가 문제인데요. 의회 밖에서, 정부기구 밖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더욱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밖에서 노조가 요구하더라도 결국엔 정부정책이나 입법으로 귀결될 텐데, 가능하다면 결정과정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노조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친노동정당의 힘이 취약하다면 경사노위 같은 곳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의회에선 친노동정당이 10%의 의석을 점하기 힘들지만 경사노위에서는 최소 3분의 1이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는 보장은 약하더라도 정부가 약속하고 의회가 우호적 조건을 형성한다면 노동조합에서도 참여할 동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는 존재하겠죠.

**최태욱**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지도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거예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지만, 정치구조상으로도 본다면 민주노총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투쟁수단이 뭐냐 할 때 노조원들 사이에서 갈리는 거 같아요. 국민들은 싫어하지만 길거리 투쟁을 통해 선거 정치공학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하는 노조원들이 꽤 됩니다. 굳이 경사노위 가봐야 뭐 얻을 것도 없이 양보만 해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노조원들을 설득할 거냐. 이런 문제들로 항상 싸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구조상으로도만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는 거예요.

**조선옥** 그렇다면 정치구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입주의가 좋다고 본다면 정치적인 의제도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제화해서 논의하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개입해서 바꾸면서 조금씩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를 지도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욱** 비판을 못하겠어요.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들어가서 해보시라 말은 쉽죠.

**조선옥** 과거에 노동운동하기 힘들 때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목숨 걸고 유인물 뿌렸잖아요. 그런데 주장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모든 곳에 가서 해야 하지 않나요.

**최태욱** 장이 열렸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기만이 난무하는 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데 협의의 장에 들어가면 양보만 할 수도 있잖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조선옥** 유럽에서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정부가 국가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일종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긴 거죠.

**손영우** 원래 98년 이전에는 민주노총에서 먼저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옥** 이거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나 정권 성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걸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와서 바꿔내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자기들의 생각을 어필하는 게 실효성이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동자 이익 대변할 정당 미약

**오영하** 우리 입법과정을 볼 때 입법과정이 더디고, 입법과정에서 정치적인 현상이 과잉되고 왜곡이 벌어지는 것들은 다 이해관계 주체가 뚜렷할 때, 그리고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배의 문제에 부딪힐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상 법률이 근로조건

에 관한 주요 노동법일 때는 어김없이 이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사회적 대화가 입법과정의 일부가 되면 확실히 그 구속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의심은 됩니다. 사회적 대화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입법부로 넘어와서도 입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정당이 개입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정치구조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대화기구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 사항이 국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형성이 되거나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하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최태욱** 사회합의주의의 기본원리는 갈등하는 주체들이 서로 승복할 수 있도록 합의하게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갈등주체들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절충과 타협을 해나가는 게 사회적 대화라면, 그 갈등주체들을 정치적으로 대리하는 자들이 의회에 모여서 입법과정을 맡아주는 건 결국 사회적 대화의 연장이라는 거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관련 법률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실효성과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갈등주체를 대표하는 유력한 정치적 대리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한국의 갈등주체는 크게 셋인 거 같아요.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몸집은 큰데 힘은 약하니 약대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근데 이 3대 약대집단을 다 합치면 국민 대다수예요. 그들의 가족까지 치면 국민의 80%에 이르는데, 이 거대한 집단의 구성원이 거의 다 정치적 대리인이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문제의 핵심이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들을 보십시오. 이념이나 계급보다는 인물이나 지역기반 정당들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주체 가운데 누구를 대표하는지 명확한 정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역기반이 주로 호남이나 영남인 것은 인정하냐, 그들이 대표하는 계층이나 부문이 누군지는 알기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둘 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선거전문 정당이죠.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선거전문 정당이 양대 정당 체제를 이루는데, 노동자의 이익, 소상공인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조선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성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원들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이슈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의제를 넓혔으면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정치·사회 이슈도 논의하는 식으로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면 비례구성이 넓어지면서 다양하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잖아요.

**정영훈** 지난번에 근로시간 단축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였기도 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법안을 개정했잖아요. 그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세트로 같이 해야 한다는 아쉬움을 돌아보면, 결국은 사회적 대화 논의 기구에서 왜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여파가 밀려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깐요.

사실 5년 단임제가 더 큰 문제이지 않겠는가 싶긴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맞게 좀 더 공론의 장도 같이 열어가는 사회적 대화라면 불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국회로 넘어가도 의원들이나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사회적 대화기구 자체가 빅이슈를 다루는 것을 그만 하든지 본격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경사노위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 아젠다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모습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가 입법안을 내면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도 가지는 것이 어떨것는가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보면 민주노총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 이슈들마다 합의하려고 하니깐 안 들어오는 곳도 많은 거 같은데, 지금 몇 개 특위는 논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동 4.0 같은 대화를 주도한다든지, 그런 걸 바라긴 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더군요. 결국 지난한 사회적 대화과정을 거쳐서 뭔가 나와야 의회도 거기에 구속 받으려 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영우** 말씀대로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들끼리 이해와 요구를 교환하는 영역이 있고, 정부나 입법과정에 자문 역할을 해주는 영역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기능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조명 받는 위원회는 ILO 비준 관련된 노동법 개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이나 이런 위원회가 집중 조명을 받는 거죠.

그런 교환들이 정치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다면, 노사가 정부에게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해주면서 혹은 지역이나 업종 차원에서 논의와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영훈** 주고받을 필요성이나 뭘 주고받을 것인가, 정말 주고받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가 아랫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논의되고 위에서도 내려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걸 조직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작업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중앙 차원에서 논의가 정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프랑스는 노동법 1조에 있지만 스페인은 헌법 자체에 있는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든가, 스스로 발전시키려면 결국 아래에서부터 사회적 대화의 문화라는 게 중요하죠.

## 사회적 대화에 국회의 지속적이고 일상적 관심 필요

**손영우** 사회적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교환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핵심적 이슈로 ILO 문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경사노위에 논의를 의뢰한 의제이죠. 그래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여서 노사에 협의를 요구한다는 건데, 논의가 공전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정치적 구조의 특성이나 국회에서 이행의 신뢰가 낮아서,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회에서 대화기구에 넘겨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 98년도에는 노사정위원회 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했었죠. 그래서 합의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원내대표가 참여하니까 노조나 사용자는 합의를 하면 국회를 통과하겠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대통령제 정치구조에서 기다려주는 게 미덕인지 아니면 좀 더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98년에 원내대표가 참여했어도 이행에 대해 노조는 불만을 표명했듯이 이행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정식 위원으로 오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전되고 합의가 안 돼서 여기로 넘긴 문제인데, 노사에 여야까지 더해지면 합의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거죠.



**손영우** 경사노위 전문위원

**조선욱** 글썬요. 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경사노위나 노사 당사



자가 협의해서 합의한 안에 반대할 정치세력이 있을까요? 국회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니까, 이해관계자들끼리 협의해서 가져와, 그럼 우리가 해줄게, 우리는 심판이고 중재자이지 뛰는 선수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인 듯한데요.

**최태욱** ‘해줄게’가 아니고 ‘볼게’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옥** 그 정도면 반영은 많이 돼요. 그런데 진정으로 합의한 것이냐는 거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잖아요. 당사자들이 자기주장만 하다가 나가버리니까 공익위원들이 안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기구의 현 수준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뢰가 좀 더 쌓이면서 의견들 내면서 올라오고 가야 하는데, 서로 상대의 의견을 안 들으려 하잖아요.

**손영우** 실제 경사노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노위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노사정이 협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작년 6월에 통과됐죠. 그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ILO 법안입니다. 물론 그것은 노사정 합의안은 아니었고 공익위원 합의안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공익위원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1차 입법이 됐죠.

한정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 노조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죠. 노동계 요구 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나 타임오프 문제에 관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조선옥** 이게 공익들도 원칙적인 것이지만, 타임오프 문제를 예로 들면 과거처럼 전임자 문제를 노사자율로 맡겨 놓기에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타임오프에 어느 정도 현상이 순응된 것을 살리면서, 그 대신 전임자 임금을 주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최대한 합의를 반영하려고 했어요.

**손영우** 노사정 합의를 했으면 달랐을 겁니다. 공익위원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걸 텐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은 노사가 추천해서 구성된 전문가들이거든요. ILO

관련 내용이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합의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익위원 간의 대리전의 성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익위원 안이 전달 됐을 때 국회의원실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조선옥** 공익위원 안을 가지고 만든 법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법제실을 통해서 체계화한 거죠. 공익위원들하고 한다고 하시면서.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또 뭐였어요?

**최태욱** 한정애 의원의 입법안 취지가 기업별노조를 현실로 인정하자는 걸로 읽힌다는 점인데,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산별노조로 가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산별노조의 활동이 좀 더 촉진될 수 있는 쪽으로 말해줘야 하는데, 한 의원님 입법안을 보면 기업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자, 예컨대 실업자나 산별노조 소속원은 기업에서 허락을 받아야 노조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선옥** 두 조항에 대해 노동계 의견이 상충되는 듯한데. 해고자인 사람을 노동조합 못하게 하는 게 지금 기업별노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해고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주들이 꺼리는 것이 자기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이 되어 교섭위원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해고자든 누구든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노조의 임원은 소속 직원인 조합원이 하도록 조항을 넣었는데, 민주노총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최태욱** 한국노총도 문제제기해요.

**조선옥** 기업별노조에서 해고자가 굳이 노조 위원장이나 임원을 해야 한다면 해당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로 바꿔버리면 해고자든 누구든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산별노조 촉진이 아닌가요?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은 또 반대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손영우** 그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올 때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선옥** 그건 다음 문제예요. 이제 직원인 조합원이 있고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일반인이 회사에 출입하면 기록을 남기고 신분증을 맡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더라도 회사가 시설관리권을 들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들어간 것이예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신분과 목적을 밝히면 사업주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을 때,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된다 하면 종사자가 아니니까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최태욱** 오히려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주었다는 건가요?

**조선옥**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태욱** 해석이 많이 다르네요.

**조선옥** 그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게 조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직원이 아닌 조합원은 임원까지 못 간다 할 때 해고자가 임원이 되려면 산별로 바꿔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업장 출입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무단출입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사규에 따라 이렇게 적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규에 따라 못 들어가게 한다면 본인들은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냐는 거죠.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법적 근거를 넣은 것이고, 기업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것에 대해 반대가 강하다는데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법이란 단체협약보다 낮은 단위잖아요. 단체협약을 통해 좀더 자유로운 출입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영하** 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논의와 입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건 보좌관으로서 고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선옥** 대법원 판례는 이렇고, ILO 조항은 이렇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솔직히 산별노조라 하면서도 기업별 단위에서 노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중교섭 구조도 외국과는 다른 노동조합 활동이죠.

**오영하**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노동계나 경영계의 의견을 들을 거예요.

**조선옥** 소위차원에서 하지 않을까요?

**오영하** 만약 노사합의안이 나온다면 어떤가요?

**조선옥** 노사합의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국회도도 그게 제일 좋죠. 어느 국회의원이 한쪽에서 반대하는 법안을 내고 싶겠습니까?

## 포용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

**오영하** 사실은 노사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사안일 때 공익위원 안이 나오죠.

**조선옥** 현재 공익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노동계가 추천한 사람들이예요, 사회적 대화는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장만 다 담아야 된다고 하면 애초 합의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중재자,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일수도 있는 거죠.

**정영훈**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사가 전문가의 의견 정도로 생각한다면, 누가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조선옥** 어차피 합의할 수 없는 걸 안다면, 양쪽 의견을 참조해서 들어보고 우리가 하겠다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ILO 문제는 협약 비준 문제일 뿐 아니라, 한-EU FTA에서 약속 이행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국익 차원에서라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손영우** 환노위에서 경사노위에 논의를 요청하고 나서 한 번도 참여하거나 참관을 온 적이 없는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조선옥** 국회의원이 회의 가서 참관하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손영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신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훈** ILO 문제는 조직노동자들 외에는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끼리 출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싸울까 생각하는 거죠. 노사관계를 큰 틀에서 재편하는 과급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죠. 이게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근로시간 관련 쟁점이 훨씬 더 중요한 의제라고 볼 겁니다.

**조선옥**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EU가 4월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만약 무역 분쟁으로 가면 그때 이걸 왜 안 했느냐고 화들짝 놀라겠죠.

**정영훈** 한-EU FTA에는 협정 불이행에 대한 조정조항이 없어요.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져가서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조항을 넣었을 뿐이죠.

**조선옥** 야당에서는 국익 문제라고 해도 안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경사노위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의제를 다룬다면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훈** 처음부터 각 정당들이 자기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논의 결과를 가져오면 안을 만들려고 하죠. 각 정당들도 논의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사노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뭘니까? 대통령은 한번 논의해 보세요 이런 건가요?

**손영우** 대통령은 얼마 전 경사노위 1차 회의 때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으로 생각하고 논의에 임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옥** 대통령께서는 관심도 많이 보이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죠.

**정영훈** 경사노위의 논의과정이 참여하게 엇갈리면 시간만 더 소비되고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 조선옥** 국회도 그만큼 사회적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2월 국회가 안 열리고 있잖아요.
- 손영우** 우리나라 정치적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가 요청되는 이유는, 여소야대 정부가 구성되면 정부가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대한 압력기관으로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생각한 것이긴 하죠.
- 정영훈** 타협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다 시간이 다급해지면 법안 내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 조선옥** 처음에는 합의를 해 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논의라도 해 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의견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기대치가 낮아져요. 그러니 끝나고 나면 다들 지치거나 기대를 안 하게 되고, 축적되는 것 없이 사회적 대화기구도 반짝하고 마는 거죠.
- 오영하** 지금 상황이 여소야대인 건 맞지만, 과거정부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그렇게 사용해 왔잖아요.
- 조선옥** 과거 한나라당은 노사정위 폐지법안도 냈어요. 사회적 대화는 낭비이고, 힘으로 빨리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갈등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게 더 아쉬운 거죠.
- 오영하** 입법부는 정당정치가 운영의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기관의 본질상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입법부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입법부가 합의나 논의 결과를 존중해 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죠.
- 조선옥** 저는 존중했다고 생각해요. 산안법 개정안도 김용균 씨의 죽음이 기폭제가 됐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논의한 결과물이 있었기에 논의하기 쉬웠던 것 같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겠다는 것도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가

TF를 꾸려서 의결한 결론이잖아요. 환노위는 가급적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오영하** 지금까지 귀담아 들을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다음 주제인 의제 중 국회 입법 예정사항에 대해서도 대략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슈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태욱** 제가 보기엔 ILO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해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양대 노총은 이거는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걸 예, 아니오의 문제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에 비해선 탄력적 노동시간제도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니까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늘 일어나는 국가가 되어야 사회통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경사노위가 중선관위 정도의 위상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사





노위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익들이 만나는 장이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포용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포용성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념으로부터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려면 결국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차지해야 할 것 같아요.

진정 한국이 사회합의주의 국가로 발전하길 원해서 경사노위를 만든 것이라면 정치를 개혁하라는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사노위가 그런 요청을 한다면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포용국가로 가겠다고 한다면 경사노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경사노위 입장에서 사회합의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에 대한 제언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의 정치적 환경과 구조에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다당제와 연립정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다당제와 연립정부로 가면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훈** 경사노위의 위상이 범국가적 의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사노위가 논의된 아젠다를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모어나갈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ILO 협약 비준이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의제를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다가서 노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습니까. 노사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경사노위가 공론의 장을 좀 더 열어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회는 너무 현안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원전정책과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노동문제는 왜 못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선옥**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못하는 게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인 것 같은데, 신뢰를 쌓는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에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도 꼭 들어왔으면 하고요.

**오영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사노위의 방향성을 정한다든지 국회와 소통할

때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